새로운 도약, 구민과 함께하는 서구의회

2026. 9. 22.

심 사 결 과 보 고

의안 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비고
462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4622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22.

행정자치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년 8월 27일, 이원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다. 상정 및 심사 일자: 제299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심사.의결(2026. 9. 10.)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 및 위촉 횟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옥주)

○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 및 연속 위촉 횟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속한 위촉 횟수를 4회로 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6. 소 수 의 견: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622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 의 자 : 이원배 의원

찬 성 자 : 강정수, 설재영, 박순호, 신진미, 박용준, 함미정, 최혜연, 김세원, 최병순, 정홍근, 김동성, 최미자, 양유환, 송용석, 정인화, 김태민, 정능호, 오세길, 김명현(19인)

1.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신규 강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 및 위촉 횟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라. 입법예고 : 2026. 8. 28. ~ 9. 3.(7일간)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속한 위촉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여 4회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강사의 연속한 위촉 횟수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속한 위촉 횟수에 포함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연속한 위촉 횟수가 3회를 초과한 강사의 위촉 기간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촉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강사) ① ~ ③ (생 략)	제27조(강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촉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속한 위촉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속하여 4회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항